|  |  |  |
| --- | --- | --- |
| **세금체납금 감면사안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32호  세관통관업무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환경) 개혁을 심화하고 세금체납금 감면문제를 한층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에 유관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납세의무자가 해관총서 2015년 27호 공고 제1조 규정에 부합되고 법에 의거 세금체납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중국전자구안 법률집행시스템(이하 ‘법률집행시스템’) 중의 ‘세금체납금 감면신청’기능을 통해 정보를 기입하고 나서 관련 자료의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법률집행시스템을 통해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2. 해관총서 2015년 제27호 공고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자체 검사 발견’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조사조례)실시방법> (해관총서령 제230호) 제4장과 관련된 자발적 공시의 규정에 부합되며, 또한 세관의 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상황만을 가리킨다.  3. 납세의무자가 법률집행시스템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자료 업로드 시, 문서서식 기준은 해관총서 2014년 제69호 공고의 별첨 <통관업무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업무환경) 세관신고서류 전자스캔 또는 문서서식 전환 기준>의 유관 규정을 참조한다. 세관이 서면자료를 검사 대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련 서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고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별첨: 전자구안 세금체납금 감면 페이퍼리스업무(종이 없는 업무환경) 모듈작업가이드.doc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716927/2017073110204056008.doc>  해관총서  2017년 7월 20일 |  | **关于进一步明确税款滞纳金减免**  **事宜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7年第32号  为深化海关通关作业无纸化改革，进一步明确税款滞纳金减免问题，现将有关事宜公告如下：  　　一、纳税义务人符合海关总署2015年27号公告第一条规定的可以依法减免税款滞纳金情形的，应通过中国电子口岸执法系统（以下简称执法系统）中“税款滞纳金减免申请”功能录入信息并提交相关材料的电子数据，并可通过执法系统查询办理情况。  　　二、海关总署2015年第27号公告第一条第（三）项规定的“自查发现”，仅指符合《〈中华人民共和国海关稽查条例〉实施办法》（海关总署令第230号）第四章有关主动披露的规定，并按照海关规定程序办理的情形。  三、纳税义务人通过执法系统以电子方式上传材料的，文件格式标准参照海关总署2014年第69号公告附件《通关作业无纸化报关单证电子扫描或转换文件格式标准》有关规定。海关需要验核纸质材料的，纳税义务人应当提交相关纸质材料。  　　本公告自2017年8月1日起实施。  附件：电子口岸端税款滞纳金减免无纸化作业模块操作手册.doc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716927/2017073110204056008.doc>  　　海关总署  　　2017年7月20日 |